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00 호

2006년 7월 14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68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3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227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일부개정규정) 9

예 규

- 인천광역시남동구예규 제55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기준) 12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16호(차량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예고)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17호(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수용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2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23호(장기보관물품강제처리(폐기처분)공고) 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24호(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자재산압류예고에따른공시송달공고) 2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27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구월1동1210-16번지일원)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열람) 2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30호(학술용역입찰공고(남동구21C발전방향 「VISION남동2011」) 3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32호(주택임대사업자등록말소공고) 3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33호(2/4분기임대주택임대조건신고사항공고) 3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34호(공영주차장보상계획열람공고) 3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37호(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4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38호(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5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39호(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5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40호(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54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31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55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32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구월1동1183-25번지외2개소)실시계획인가고시) 56

인천광역시공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719호(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추가(3차)주민공람·공고) 58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66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계	769	494	19	43	17	196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74	441	11	40	16	16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5	3	1	1		
행정	2	1	1			
시설	1	1				
행정·임업	1	1				
보건·의무	1			1		
5급 소계	42	17	2	5	1	17
행정	24	11	2		1	10
의무	4			4		
토목	1	1				
건축	1	1				
행정·전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토목	1	1				
행정·지적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토목·임업	2	1				1
행정·화공·기계·환경	1					1
행정·임업·토목·지적	1					1
6급 소계	136	90	3	6	3	34
행정	81	45	3		2	31
세무	3	3				
사회복지	2	2				
전산	1	1				
임업	2	2				
보건	1	1				
환경	1	1				
토목	3	3				
건축	3	3				
지적	3	3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9	6				3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행정·기계	1	1				
행정·화공	1	1				
행정·농업	1	1				
행정·임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2				
행정·토목	1	1				
임업·토목	1	1				
통신·전자통신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간호	1			1		
토목·건축	3	3				
행정·전기·건축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화공	1	1				
행정·토목·건축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7급 소계	194	142	5	7	4	36
행정	103	66	5		2	30
세무	14	14				
사회복지	11	5				6
전산	3	3				
기계	2	2				
전기	3	3				
화공	1	1				
농업	1	1				
임업	3	3				
수산	1	1				
보건	5	4		1		
의료기술	1			1		
간호	4			4		
환경	5	5				
토목	16	15			1	
건축	11	10			1	
지적	5	5				
행정·별정	1	1				
화공·환경	1	1				
축산·수의	1	1				
보건·약무	1			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8급 소계	206	136		12	7	51
행정	98	65		1	3	29
세무	21	21				
사회복지	30	8				22
전산	4	4				
기계	2	1			1	
전기	2	2				
화공	2	2				
농업	1	1				
임업	4	3			1	
축산	1	1				
수산	1	1				
보건	9	5		4		
의료기술	2			2		
간호	5			5		
환경	5	4			1	
토목	8	8				
건축	4	3			1	
지적	3	3				
통신기술	1	1				
임업·토목	1	1				
전기·기계	1	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9급 소계	90	52		9	1	28
행정	42	21			1	20
세무	5	5				
사회복지	10	2				8
전산	2	2				
전기	1	1				
임업	4	4				
보건	6	2		4		
의료기술	4			4		
식품위생	1			1		
환경	3	3				
토목	5	5				
건축	4	4				
지적	3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소계	1	1				
수행비서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동
기능직 계	93	51	8	3	1	30
6급 소계	3	3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7급 소계	5	4				1
기계	1	1				
운전	3	3				
조무(조무)	1					1
8급 소계	12	10	2			
전기	1	1				
기계	3	2	1			
운전	3	3				
사무보조(필기)	1		1			
조무(조무)	4	4				
9급 소계	26	14	5	2		5
건축	1	1				
교환	1	1				
운전	9	4	1	1		3
간호조무	1			1		
사무보조(필기)	2		2			
사무보조(사서)	1	1				
조무(조무)	10	7	1			2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	1		1			
10급 소계	47	20	1	1	1	24
기계	1	1				
운전	18	2		1	1	14
조무(조무)	20	9	1			10
조무(지도)	6	6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	1	1				
사무보조(필기)-조무(조무)	1	1				

☐ 제 안 이 유

- 민선4기 출범과 관련하여 공약사항의 내실있는 실천과 선진자치구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구상·시책발굴등의 전문적인 보좌기능을 강화하여 선진행정·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정원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정원 증감 및 직급간 변동 없음
- 직렬 변경
 - 행정7급 △1 ⇒ 행정·별정 7급 1명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22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본청 각실·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494	
기획 감사실	계		34	(생략)
문화 홍보실	계		19	(생략)
총무과	계		38	
	정무직	-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33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통신·전자통신1
		7급	8	행정6, 통신기술·전자통신1 행정·별정1
		8급	13	행정11, 통신기술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1
		9급	2	행정2
	별정직	소계	1	
		7급	1	일반비서1
	기능직	소계	3	
		8급	1	조무(조무)1
		9급	1	교환1
		10급	1	조무(조무)1
경영재정과 ~ 도시계획과	(생략)			

☐ 제 안 이 유

- 민선4기 출범과 관련하여 공약사항의 내실있는 실천과 선진자치구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구상·시책발굴등의 전문적인 보좌기능을 강화하여 선진행정·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정원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부서간 정원 증감 및 직급간 정원 변동 없음
- 총무과 정원중 직렬변경

7급	8	행정7,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1	8	행정6, 통신기술·전자통신1 <u>행정·별정1</u>
----	---	-------------------	---	----------------------------------

예	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준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규 제 5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원칙, 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①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4. “포인트”라 함은 선택적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복지비로 1포인트는 1천원의 선택적 복리비와 동일하다.
5. “공통 포인트”라 함은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6. “변동 포인트”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7. “조정률”이라 함은 선택적복지 예산규모등 당해년도 가용예산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조정하는 변수를 말한다.

제 2 장 후생복지 증진

제4조(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①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은 공무원의 업무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후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후생복지 관련 부서의 장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과 의회 및 예산조달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실태조사) ①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의 수준과 예산을 점검하여 기존 복지재원을 선택적 복지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만족도 및 복지수요 등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선택적 복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대책) ①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기존 복지에 산을 전환하여 조달하거나 일반 세출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②제1항 관련 소요되는 재정지원 관련 부서의 장은 후생복지 증진의 제고를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급기준

제7조(적용대상) ①선택적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은 남동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1. 휴직중인 자
2. 국외에 파견중인 자
3. 직위해제중인 자
4. 징계중인 자
5.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선택적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8조(적용기간) ①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전출·해외파견·휴직·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제한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 제4호(육아휴직)·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그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연도중에 신규채용·전입·복직으로 인하여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익월 1일 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11월이후 신규채용된 직원은 익년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포인트 배정기준) ①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에서 조정률을

적용한 포인트로 확정한다.

1. 공통 포인트 : 전원에게 3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 포인트 :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3. 가족 포인트 : 배우자 100포인트, 부모·자녀 1인당(4인 이내) 5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4. 출산장려 포인트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 설계일 기준년도에 1인당 100포인트를 1회 배정한다.
5. 기타 장려 포인트 : 모범공무원 장려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추진 유공직원을 선발하여 년 10인 범위내에서 1,000포인트를 장려 포인트로 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개인별 포인트는 전년도 12월 31일자로 확정되며, 적용기간 중 발생하는 근속기간 및 가족상황의 변동사항은 해당연도 포인트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인트의 일할정산 및 감액) ①전출, 퇴직, 해외 파견자와 질병·육아·가사휴직(6월이상)을 제외한 휴직 시는 일할 정산한다.

②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중인 자의 포인트의 감액은 직위 해제자의 경우 총 포인트를 일할 계산하여 직위해제 기간의 포인트를 감하고, 정직자와 감봉자는 직위해제 감액방법과 동일하되 산출된 포인트에 정직은 2/3를, 감봉은 1/3(소수점 이하는 절사)을 감한다.

제11조(포인트의 차감 및 적용 배제) ①복지수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인트의 사전 차감 및 중복수혜를 배제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7조에 의거 남동구 공무원 자녀의 보육료 지원 대상자(직장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에게는 다음과 같이 포인트를 사전 차감한다.

가. 2세이하 자녀 : 차감없음

나. 3세이상 자녀 : 1인 70포인트, 2인 120포인트, 3인 150포인트 차감

②남동구 소속 부부공무원 및 복지제도 시행기관에 대해서는 가족포인트 산정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을 준용하여 부부중 1인에 한해 부양가족 포인트를 제공 한다.

제12조(이월의 금지) 당해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 4 장 선택항목 및 이용기준

제13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으로 하며 보험계약금액에 따라 2종류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기본 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소진되며, 추가 또는 변경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용기간 이전에 결정한다.

제14조(자율항목) ①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자율항목 사용은 항목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남동구청 복지카드로 정해진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복지시스템관리업체의 웹사이트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③자율항목 포인트 사용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용하되, 상반기에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기본항목만 배정받은 자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

는다.

제15조(선택항목의 조정)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포인트를 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선택항목, 선택안(Option) 및 가격표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 및 회계

제16조(개인별 선택) ①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별 선택은 매년 12월중에 개인별로 설계하여 제출하면 수혜도,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항목을 확정한다.

②기본항목을 확정된 후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③지정된 기간내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가 설계한 기본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선택적 복지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된 포인트의 정산은 시스템관리업체로부터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포인트 내역을 당월 5일까지 보고받아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당월 15일까지 카드제휴업체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②관리 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선택적 복리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를 함으로써 운영회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8조(포인트 반납) 정해진 자율항목을 벗어나 부적정하게 사용된 포인트나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발생한 개인별 초과사용 포인트는 세출예산 반납금으로 처리한다.

제 6 장 유지관리

제19조(공무원 선택적 복지 운영위원회) ①공무원 선택적복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선택적복지운영위원

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선택적 복지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④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복지실태확인 등) 후생복지 관련 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필요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운영 기준의 제11조제1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수요복지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선택적 복지제도의 목적, 규정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3조)
- 재원확보에 따른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임무규정(안 제4조, 제6조)
-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적용대상 : 남동구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남동구 의회 의원 (단, 휴직자, 국외파견자, 직위해제자, 징계중인자 등은 배제)
 - 적용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포인트 배정기준을 정함(안 제9조)
- 포인트 사용에 대한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 남동구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16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6. 07. 24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07. 10 ~ 2006. 07. 24 (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4더7134	이기봉	남동구 만수동 5-321 아주(아) 바-115호	인천지방법원 (96카단11898)	오창운	대전.대덕. 오정동 449-15
인천30나5923	문우영	남구 용현동 556-55	인천지방법원 (95카단16326)	신상석	서울.마포.공덕동369-29호
인천30누6545	이병용	남구 송의동 동심빌라 B/2호	서울지방법원 (98카단197915)	성재경	서울.관악.봉천동532-231
05러9340	홍순환	계양구 계산동938-21 호302	창원지방법원 (2001카단9410)	구경희	부산.진구.초읍동 249-24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32)

2006. 7.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17호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 수용 재결서 정보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지구외의 법면 토지 수용을 위하여 2006. 7. 6일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보에 대한 공시송달하오니 대상 소유자 또는 관계자께서는 미 수취 시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6. 7.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조경 공사
3. 송달일자 : 2006.7.10
4. 공고기간 : 2006.7.10 ~ 2006.7.24
5. 공문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계획과)
 - 전 화 : 032)453-2952
6. 공시송달대상
[소유자] “별지”

[관계인] “별지”

7. 기 타

공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별지]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11인)

- 안영준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280
- 김성배 : “ ” “ 286-3
- 김창오 : “ ” “ 1B1L 현대모닝A308/1004
- 백남순 : “ 부평구 갈산동362 동남A 1/604
- 한동근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장안리 546-7
- 이경수 : 시흥시 대야동 332-13 극동A105/304
- 권용구 : 인천시 남구 문학동 114-4
- 구창분 : “ 남동구 서창동 537 태평A105/1005
- 이광우 : “ ” 만수동 710
- 전주이씨(이계우): 인천시남동구만수동1037 현대A105/1506
- 김호철 : 인천시 서구 가좌동 81-7 현대A3/1101

관계인 (7인)

- 교보생명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1
- 대한상호신용금고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75
- 한효림 : 안산시 와동 108-10
- 태평주택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54-4
- 주택사업공제조합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남인천세무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47-1
- 남동농협협동조합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23호

장기보관물품 강제처리(폐기처분)공고

우리과에서 구월4동 1269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지장물에 대하여 2004.9.24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보관물품에 대하여 아직까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이 찾아가지 않고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27조의7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기처분)하고자 공고 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06.7.12 - 7.26(15일간)
2. 대집행 위치 및 상호 : 구월4동 1269-1번지 왕대박게임장
3. 폐기처분 대상 물품 및 수량 : 게임기 26대 및 의자 24개
4. 물품 보관장소 : 남동구청 차량등록민원실 옆
5. 강제처리 예정일 : 2006. 8. 11 이후
6. 문의처 : 남동구청 주차시설팀(☎453-2904)

2006. 7. 1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24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채납자 재산압류예고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제6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과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채납으로 인해 채납자의 차량에 대해 압류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송 달 내 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채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2.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공시송달대상자 명단”참조
3. 공 고 기 간 : 2006.7.13 ~ 2006.8.1(20일간)

과태료를 납부하고자하는 채납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청소과 (☎032-453-2556)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6.7.1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연번	납부자성명	부과일자	부과금액(원)	주소	위반사항
1	오승운	2003-03-25	50000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3번지 10호 29통 3반 401호	쓰레기불법투기
2	이희창	2004-05-10	100000	406-0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47번지 4통 3반 선학시영아파트 106동 601호	쓰레기불법투기
3	이희권	2004-08-10	100000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6번지 15호 28통 4반 다가구주택 402호	쓰레기불법투기
4	이주석	2004-10-21	100000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번지 31호 14통 6반 대영아파트 105동 501호	쓰레기불법투기
5	박태균	2004-11-23	100000	406-1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57번지 3호 4통 1반 201호	쓰레기불법투기
6	김익형	2004-12-08	100000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4번지 30통 3반 햇빛마을백산아파트 113동 702호	쓰레기불법투기
7	한유덕	2004-12-24	100000	402-02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12번지 53호 13통 3반	쓰레기불법투기
8	신영철	2005-02-03	100000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7번지 1호 24통 3반 현광아파트 나동 401호	쓰레기불법투기
9	장운희	2005-02-22	100000	405-2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11번지 3호 16통 3반 상아그린빌라 A동 102호	쓰레기불법투기
10	전민자	2005-07-22	100000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14호 28통 4반 대신아트빌라 5동 302호	쓰레기불법투기
11	안순성	2005-08-16	100000	407-708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433번지 1호 137동 206호	쓰레기불법투기
12	오동환	2005-10-12	100000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1번지 20호 2통 2반 삼성빌라 3동 202호	쓰레기불법투기

연번	납부자성명	부과일자	부과금액(원)	주소	위반사항
13	유기정	2005-10-20	100000	405-8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57번지 1호 13통 3반 광우빌라 3동 202호	쓰레기불법투기
14	문종필	2005-10-20	100000	405-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54번지 12호 1통 2반 201호	쓰레기불법투기
15	유은자	2005-11-09	100000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0번지 1호 33통 1반 새하늘주택 102호	쓰레기불법투기
16	이현희	2005-11-14	100000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4번지 63호 19통 5반 미래빌라 A동 402호	쓰레기불법투기
17	신강현	2005-11-23	100000	400-1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7번지 2호 2통 3반	쓰레기불법투기
18	임성웅	2005-12-14	100000	403-1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정동 607번지 동암신동아파트 114동 1803호	쓰레기불법투기
19	최영민	2005-12-23	100000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5번지 20호 23통 4반	쓰레기불법투기
20	최한규	2005-12-27	100000	402-2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57번지 29호 신동아빌라 402호	쓰레기불법투기
21	이경민	2006-02-16	100000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05번지 6호 29통 3반 지01호	쓰레기불법투기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2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 구월1동1210-16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64) 및 교통과(☎453-29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당해 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7. 1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210-16번지 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교통시설(주차장)
- 명 칭 : 구월1동 1210-1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 A = 891.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200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9.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용 지 조 서

공사명 : 구월동 1210-1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대지	도로	소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구월동	1210-16	대	145.2	145.2	145.2	-	145.2	최병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44	한국 주택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1	근저당권	
2	구월동	1210-17	대	145.5	145.5	145.5	-	145.5	박경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0-17				
3	구월동	1210-18	대	148.9	148.9	148.9	-	148.9	박경옥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0-18	간석,구월 새마을금고	인천 남동구 긴석동 153-3	근저당권	
4	구월동	1210-19	대	160.9	160.9	160.9	-	160.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5	구월동	1210-20	대	139.6	139.6	139.6	-	139.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6	구월동	1210-21	대	151.5	151.5	151.5	-	151.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합 계				891.6	891.6	891.6	-	891.6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30호

학 술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남동구 21C 발전방향 『VISION 남동 2011』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설계금액 : ₩44,333,66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07월 13일(목요일) 09:00 ~ 07월24일(월요일) 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07월 24일(월요일) 15: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 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 최근 3년(2003, 2004, 2005)간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의 당해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민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 중 유사용역 실적범위는 지역경제, 사회변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공간 재편성(실시설계용역은 제외)등 당해 용역과 관련된 용역으로 합니다.
- ▶ 이행실적증명은 최근 3개월이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만을 인정하며 개찰 일시 1시간 이전(2006. 7. 24일 14시한)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팩스 접수 가능)

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W44,333,66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6. 적격심사

-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제5조에 의한 증빙서류
- 평가기준 : 인천광역시용역 등 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인천광역시예규 제430호, 2006.03.20일 공포)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학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만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5) 또는 기획감사실 기획팀(032-453-205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7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32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항을 임대주택법 제 1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 이 정 략
2.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인천광역시남동구 - 임대사업자- 379
3. 등록말소일 : 2006. 7. 13
4. 말소사유 : 임대 의무기간 경과후 임대주택 매각으로 임대주택
법 제6조의 등록기준 미달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5. 임대주택 소재지
 - ①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0-4 도림두산베어스타워 1103호(84.94㎡)
 - ②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451-6 신곡신일2차@ 201/1805(59.878㎡)
 - ③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471 건영@ 102/1903(59.8㎡)
6. 관련사항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 453-2792)

2006. 7.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용 지 조 서

공사명 : 구월1동 1183-2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m ²)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나대지	도로	소계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1	구월동	1183-25	대	173.7	173.7	-	173.7	-	173.7	전창현	서울 서초구 서초동1359 현대리츠빌101동401호				
2	구월동	1183-26	대	95.4	95.4	-	95.4	-	95.4	최진숙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540 새재마을대동아파트 513동 1303호				
3	구월동	1183-27	대	245.6	245.6	-	245.6	-	245.6	최진숙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540 새재마을대동아파트 513동 1303호				
4	구월동	1183-28	도로	35.0	35.0	-	35.0	-	35.0	인천 광역시					
5	구월동	1183-35	대	118.3	118.3	-	118.3	-	118.3	전창현	서울 서초구 서초동1359 현대리츠빌101동401호				
합 계				668	668		668		668						

용 지 조 서

공사명 : 구월1동 1242-8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주차장	도로	소계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1	구월동	1242-8	대	273.6	273.6	-	273.6	-	273.6	국(재무부)						
합계				273.6	273.6	-	273.6	-	273.6							

용 지 조 서

공사명 : 구월4동 1299-25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 재 지			면 적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주차장	도로	소계	성명	주 소	구분	성명	주 소	
1	구월동	1299-25	대	308.6	308.6	-	308.6	-	308.6	노 경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24-14				
합 계				308.6	308.6	-	308.6	-	308.6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33호

공 고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2006년 2/4분기 임대조건 신고사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논현주공아파트 12단지

신고 일자	임대사 업자명	대표자 성명	위 치	규모 (㎡)	세대 수(호)	임대보증금 (천원)	임대료 (월/원)	임대기간	분양전 환시기	분양전환가 격산정기준	비고
2006. 3.31	대한주 택공사	방만수	논현동 600-1	39.70	447	14,519	165,000	2006.4.12~ 2008.5.31			30년 국민임대
				46.52	354	17,171	199,000				

□ 논현주공아파트 13단지

신고 일자	임대사 업자명	대표자 성명	위 치	규모 (㎡)	세대 수(호)	임대보증금 (천원)	임대료 (월/원)	임대기간	분양전 환시기	분양전환가 격산정기준	비고
2006. 4.14	대한주 택공사	방만수	논현동 600-9	51.86	270	29,887	230,000	2006.6.15~ 2011.7.31	2011.8. 1	임대규칙 제3조의3	5년 공공임대
				51.83	20	29,856	230,000				
				59.57	416	32,750	280,000				
				59.71	39	32,893	280,000				
				59.29	40	32,464	280,000				

2006. 7. 1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34호

공영주차장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월동1210-1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7. 14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구월동1210-1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 공사
3. 사업의 위치 및 개요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0-16 번지일원(439.6㎡)
4. 보상시기 : 2006. 8월 예정(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5.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도시계획과
6.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0-16번지일원 3개소
 - 지 장 물 : 상기 지번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7. 보상방법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후 현금보상(물건의 소유자가 감정평가1인을 선정할 수 있음.)
 - 지장물 즉시 철거 조건으로 지급
 -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소멸된 지장물은 보상불가
8.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개별 통지
9. 공고.열람기간 : 구보 게재 일로부터 14일간(게재 예정일:2006.7.14)
10. 열람장소 : 남동구청도시계획과,교통과
11. 기타사항

토지 및 지장물조서등은 남동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시계획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 토지,지장물조서 : “첨부서류”(종이문서)

토 지 조 서

공시명 : 구월동 1210-1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대지	도로	소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구월동	1210-16	대	145.2	145.2	145.2	-	145.2	최병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44	한국주택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1	근저당권	
2	구월동	1210-17	대	145.5	145.5	145.5	-	145.5	박경옥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0-17				
3	구월동	1210-18	대	148.9	148.9	148.9	-	148.9	박경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0-18	간석,구월세마을금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153-3	근저당권	
합 계				439.6	439.6	439.6	-	439.6						

지 장 물 조 서 (총괄표)

공사 명 : 구월동 1210-1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종류	
2	구월동	1210-17	1	주택	연와조,스라브	92.01㎡	박경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10-17번지	2005.03.14.				
			2	화장실	연와조,스라브	4.25㎡							
			3	주택	연와조,스라브	12.16㎡							
			4	차양	스레트	1.96㎡							
			5	건사	연와조,스라브	0.88㎡							
			5-1	창고	콘크리트,스라브	24.00㎡							
			6	계단	스테인레스	1조							
			7	계단	스테인레스	1조							
			8	난간	스테인레스	25.8m							
			9	담장	적벽돌	2.3m							
			10	담장	시멘벽돌	1.0m							
			11	대문	삿시,적벽돌	1조							
			12	문	삿시	1조							
			13	바닥	콘크리트	18.90㎡							
			14	화단	흙	6.80㎡							
			기타	정화조1조,토시가스1식,가정용보일러1식,FAP저수조,장미1주,천나무1주,목련나무1주,대추나무1주,단풍나무1주									

지 장 물 조 서 (총괄표)

공사 명 : 구월동 1210-1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종류	
3	구월동	1210-18	1	주택	연와조,스라브	66.28㎡	박경옥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10-18번지	2004.05.01	간석,구월 세마을금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153-3		
			2	세탁실	연와조,스라브	6.48㎡							
			3	창고,육실	연와조,스라브	10.80㎡							
			4	베란다	콘크리트	14.79㎡							
			5	주택	연와조,스라브	52.17㎡							
			6	주택	샌드위치판넬	13.02㎡							
			7	계단	콘크리트	1조							
			8	계단	콘크리트	1조							
			9	담장	적벽돌	4.7m							
			10	담장	적벽돌	6.6m							
			11	담장	시멘벽돌	9.6m							
			12	대문	철재	1조							
			13	화단	흙	3.00㎡							
			14	화단	흙	3.12㎡							
			15	바닥	콘크리트	54.40㎡							
			기타	정화조1조,도시가스1식,가정용보일러2식,FRP저수조1조, 장이5주,철책1주,모래나무1주,은행나무1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6 - 83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되어 '06.01.0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기금관리 및 운용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규정 (안 제1조)
-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9조 내지 제13조)
-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내지 제20조)
- 융자지원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 (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 8. 0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453-2690, FAX 453-26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 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융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이자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

③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직접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설치 및 구성 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구의회 기금업무 소관 위원회 간사
2. 구금고의 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4. 기술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5.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기업지원처장

④위촉직 위원은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당연직 위원 중 기관의 장인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③용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④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용자계획수립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

제14조(용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규모, 한도액,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기관과의 용자협약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용자대상업체) 기금의 용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중 구에서 정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업체
2.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3. 벤처기업체

4. 첨단산업체
5.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6. KS, ISO 등 표준규격 또는 품질인증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8.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및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6조(용자신청)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용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7조(용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용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용자규모 한도 내에서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용자협약체결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용자조건) ①용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내로 한다.

- ②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다
- ③제2항의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제3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⑤제15조에 의한 우대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업체보다 융자한도액 또는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에 있어 우대지원 할 수 있다.

⑥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융자협약 체결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6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장 보 칙

제21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①구청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사후관리기간은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23조(선정취소) ①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휴·폐업 중인 업체로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②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 하거나 제18조 제3항의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 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38호

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50-1외 3필지 ‘오피앙 오피스텔’의 미술장식품 심의결과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심의일시 : 2006. 7. 5(수) 15:00
2. 심의장소 :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
3. 심의결과

【간석동 250-1 외 3필지‘오피앙 오피스텔’】

위 치		간석동 250-1 외 3필지 ‘오피앙 오피스텔’		
건 축 주		희성건설 대표이사 임종식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분	심의결과	비 고
1	‘생성 (生成)’	회화	부 결	부결사유 1. 안건1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작품가격과 설치장소에 비해 작품의 규격이 너무 큼, 같은 작품가격으로 작품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함. 2. 구상화, 추상화, 풍경화 등 작품의 장르를 다양화 하도록 함. 3.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해 작품 크기를 100호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 함. ※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 신청 요망
2	‘순환의 바람으로부터 -따스한 대지’	회화	부 결	
3	‘COSMOS -고고학적 기상도’	회화	부 결	

2006. 7. 1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39호

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 15B 2L ‘임광그대가아파트’의 미술장식품 심의결과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심의일시 : 2006. 7. 5(수) 15:00
2. 심의장소 :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
3. 심의결과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 15B 2L ‘임광그대가아파트’】

위 치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 15B 2L ‘임광그대가아파트’		
건 축 주		(주)디씨엠하우징, 서창임광지역주택조합, 임광토건(주)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분	심의결과	비 고
4	‘유영-2006’	조각	부 결	<u>부결사유</u> 1. 작품의 설치위치가 아파트 전체적인 위치도를 볼때 적정하지 못함(중앙광장 쪽이 타당) 2. 작품성이 창조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주변의 자연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동적인면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적으로 표현되어 작품성이 떨어짐. 3. 작품가격도 재료 및 작품성을 볼때 지나치게 높음. ※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 신청 요망

2006. 7. 1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840호

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22, 617-24 ‘신원 아침도시 오피스텔’의 미술장식품 심의결과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심의일시 : 2006. 7. 5(수) 15:00
2. 심의장소 :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
3. 심의결과

【간석동 617-22,617-24 ‘신원 아침도시 오피스텔’】

위 치		간석동 617-22, 617-24 ‘신원 아침도시 오피스텔’		
건 축 주		617-22 : (주)지우아이앤디 대표이사 이철수 617-24 : (주)미래도시21 대표이사 이철호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분	심의결과	비 고
5	‘도시의 창 I’	조각	부 결	<u>부결사유</u> 1. 환경조형물로서 표현된 부분이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의 환경과 조화롭지 못함. 2. 작품성 및 작품재료의 구성으로 볼때 작품 가격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게 산정됨. ※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 신청 요망
6	‘도시의 창 II’	조각	부 결	

2006. 7. 1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고	시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31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7. 1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GS자이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자 : 조 창 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4블럭
- 연 면 적 : 98,949.688m²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21~24층, 7개동, 500세대
- 사 업 비 : 208,956,000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6. 8. 1 ~ 2009. 2. 28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3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 구월1동1183-25번지 외 2개소)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64) 및 교통과(☎453-290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07. 1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 시행지 및 종류·명칭

연 번	구 분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위 치
		종 류	명 칭	
1	신 설	교통시설(주차장)	구월1동 1183-25번지일원 공영주차장설치공사	구월1동1183-25번지 일원
2	신 설	교통시설(주차장)	구월2동1242-8번지 공영주차장설치공사	구월2동1242-8번지
3	신 설	교통시설(주차장)	구월4동1299-25번지 공영주차장설치공사	구월4동1299-25번지
계			3개소	

2. 사업의 규모

연 번	사 업 명	필지수	면 적 (㎡)	비 고 (용도지역 등)
1	구월1동 1183-25번지일원 공영주차장설치공사	5	668.0	제2종일반주거지역
2	구월2동1242-8번지 공영주차장설치공사	1	273.6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구월4동1299-25번지 공영주차장설치공사	1	308.6	제2종일반주거지역
계	3개소	7	1,250.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교통과)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연번	공 사 명	사 업 기 간	비 고
1	구월1동 1183-25번지일원 공영주차장설치공사	인가일로부터 ~ 2006. 12. 31	
2	구월2동1242-8번지 공영주차장설치공사	인가일로부터 ~ 2006. 12. 31	
3	구월4동1299-25번지 공영주차장설치공사	인가일로부터 ~ 2006.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7.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 719호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3차)주민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같은 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또는 각 구청 열람장소 해당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7.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람기간 : 2006.7.10(월) 09:00~7.24(월) 18:00 (토요일, 일요일 포함)
2. 공람장소 및 대상

연번	공람기관	공람장소	공 란 대 상	구역수	연락처
1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축과	인천시 정비예정구역 검토대상지	19	440-3832
2	중 구 청	도시정비과 (재개발, 재건축 기획단)	중 구 정비예정구역 검토대상지	1	760-7513
3	동 구 청	도시정비과	동 구 정비예정구역 검토대상지	2	770-6673
4	남 구 청	도시정비과	남 구 정비예정구역 검토대상지	8	880-4482
5	남 동 구 청	건 축 과	남동구 정비예정구역 검토대상지	3	453-2803
6	부 평 구 청	도시정비과	부평구 정비예정구역 검토대상지	2	509-6932
7	서 구 청	도시개발과	서 구 정비예정구역 검토대상지	3	560-4772

3. 공고내용

가.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기 준 년 도	목 표 년 도
연 도	2005	2010

나. 정비예정구역

■ 인천시 정비예정구역 총괄

구 분	개 소	면 적(m²)	추진 단계
합 계	19	3,585,800	• 1단계 : '06년~'08년 - 기본계획 승인 후 • 2단계 : '09년~'10년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10	576,300	• 2단계(10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	20,200	• 2단계(1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	8	2,989,300	• 1단계(5개소) • 2단계(3개소)

1) 중구

구 분	개 소	면 적(m²)	추진 단계
합 계	1	440,300	
사업유형유보구역	1	440,300	• 1단계(1개소)

2) 동구

구 분	개 소	면 적(m²)	추진 단계
합 계	2	328,600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1	54,800	• 2단계(1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	1	273,800	• 2단계(1개소)

3) 남구

구 분	개 소	면 적(m²)	추진 단계
합 계	8	1,900,500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3	128,200	• 2단계(3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	20,200	• 2단계(1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	4	1,752,100	• 1단계(3개소) • 2단계(1개소)

4) 남동구

구 분	개 소	면 적(m²)	추진 단계
합 계	3	227,800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2	184,200	• 2단계(2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	1	43,600	• 2단계(1개소)

5) 부평구

구 분	개 소	면 적(m²)	추진 단계
합 계	2	57,800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2	57,800	• 2단계(2개소)

6) 서구

구 분	개 소	면 적(m²)	추진 단계
합 계	3	630,800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2	151,300	• 2단계(2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	1	479,500	• 1단계(1개소)

다. 기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안)

연 번	구 별	정비사업 유형	구 역 명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 적 률	건 폐 율	추진 단계	비고
191	중구	사업유형유보	인천역주변구역	북성동 4번지일원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40,300			1	
196	동구	사업유형유보	동인천주변구역	금창동 4번지일원	제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73,800			2	
198	동구	주택재개발	샛골구역	송림동 69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54,800	210	60	2	
200	남구	사업유형유보	제물포역세권구역	도화동 272번지일원	일반상업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40,600			1	
201	남구	사업유형유보	도화거점구역	도화동 557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581,200			1	
202	남구	사업유형유보	용현거점구역	용현동 574번지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07,600			1	
203	남구	사업유형유보	용현10구역	용현동 147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22,700	210	60	2	
204	남구	주택재개발	용현11구역	용현동 491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20,700	210	60	2	
205	남구	도시환경정비	용현12구역	용현동 453-28번지일원	일반상업지역	20,200	1000	70	2	
206	남구	주택재개발	공단시장주변구역	주안동 15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9,500	210	60	2	
209	남구	주택재개발	주안11구역	주안2동 690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98,000	220	60	2	
207	남동구	사업유형유보	성현구역	만수동 5-305번지일원	준주거지역	43,600			2	
208	남동구	주택재개발	대토단지구역	만수동 64번지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63,600	180	60	2	
210	남동구	주택재개발	간석초교주변구역	구월2동 4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120,600	210	60	2	
189	부평구	주택재개발	청천5구역	청천동 80번지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41,700	210	60	2	
190	부평구	주택재개발	청천6구역	청천동 90번지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16,100	210	60	2	
186	서구	주택재개발	석남5구역	석남동 546번지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100	190	60	2	
187	서구	주택재개발	석남6구역	석남동 578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46,200	210	60	2	
188	서구	사업유형유보	가좌거점구역	가좌3동 556-15번지일원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479,500			1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남 동 구)

